

[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-593호]

**신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(매출액 100억 이상)**

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의무적용 유예처리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12월21일  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**< 배 경 >**

- ◆ 식품 제조·가공업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·가공하는 식품의 해썹 의무적용 시기 도래
  - ※ HACCP 의무적용 시기 이후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생산·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
- ◆ 전년도 총 매출액(100억원 이상)에 따라 신규 의무적용 대상이 된 업소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**의무적용 시기 유예** 가능(「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」 제4조제4항)

**유예 대상** : 전년도 총 매출액(100억원 이상)에 따라 신규 해썹 의무적용 대상\*이 되었으나 HACCP 인증 준비 기간이 필요한 식품제조·가공업소

\*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 1.1.부터 의무적용 대상

**유예 기간** :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(필요시 현장 확인) 신청사유 및 기간이 타당한 경우 HACCP 인증 준비에 필요한 기간(최대 6개월, 해당연도 6.30.까지)

**유예기준 적용범위**

○ HACCP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경우

※ 인증 준비 없이 단순히 영업 지속을 위하여 유예를 신청한 경우 기각 처리

## □ 처리절차

- (영업자 →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) HACCP 의무적용 유예 신청 제출

### < 구비서류 >

- ① 해썹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[서식1]
- ② HACCP 적용 준비 현황 및 계획서[서식 2]
- ③ 영업등록증
- ④ 신규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 증빙자료
- ⑤ 영업등록증 상에 있는 모든 품목제조보고서의 유형 및 해썹인증 여부 내역 제출(인증서 및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제출)

※ 구비서류 미흡 시 1차 보완요청, 2차 기각처리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- (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→ 영업자) 업체별로 유예 사유·기간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식약처(식품안전인증과)에 보고, 식약처장의 승인 후 그 결과(승인 또는 기각)를 영업자에게 통보

## □ 추진일정

- 유예 신청서 접수 : 해당연도 생산실적보고 완료일 이전까지.(2월말)
- 유예 신청 검토결과 통보 : 해당연도 3.15.(금)까지

## □ 접수방법

- 문의전화 : ☎ 043-928-0118
- 접수방법 : 우편, 팩스, 이메일
  - 우편 : (28160)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5로 156  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관리팀
  - 팩스 : 043-928-0139
  - 이메일 : help@haccp.or.kr

※ 신청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 및 이메일 도착일까지 유효함

- 붙임 1. 해썹 의무적용 유예 신청서 서식 1부
- 2. 해썹 적용 준비 현황 및 계획서 서식 1부. 끝.



